

#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힐링시니어주간보호센터

##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

### 제1조 (이용정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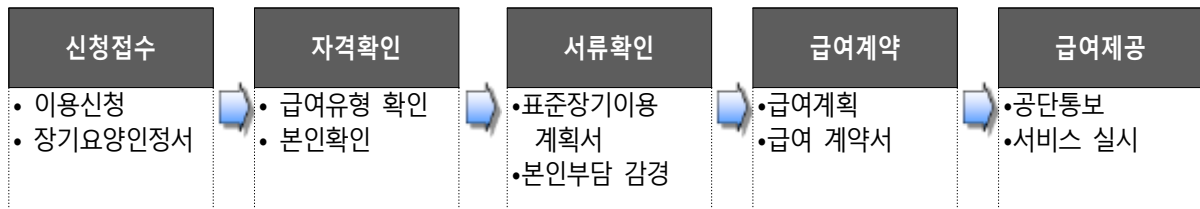
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**29명**이며,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·군·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.

### 제2조 (이용대상)

이용대상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.

### 제3조 (이용절차)

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.



### 제4조 (이용자 모집방법)

모집방법은 온라인,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.

| 이용자  | 홍보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온라인  |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, 블로그, 인터넷 홈페이지 |
| 오프라인 |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            |
| 기타   | 이용자,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            |

## 이용계약

### 제1조 (급여계약 등)

-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'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'(이하 "계약"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.

1. 계약 당사자
  2. 계약기간
 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 4.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④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

## 제2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
-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  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 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- ⑤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## 제3조 (계약해지)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 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 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  4.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  5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  6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## 제4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권리)

-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 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

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2.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
3.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

4.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5.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
6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 상담,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7.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8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### **제5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의무)**

1.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
2.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

5.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## **이용료**

### **제1조 (이용료)**

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 비용은 원장이 정한다.

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
③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 한다.

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.

### **제2조 (이용료 변경 및 절차)**

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1.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
2.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

3. 이용자의 건강상태,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
4.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5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
  -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.
    1.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.
    2.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.
    3. 제공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(보호자)와 협의하여 적용한다.
    4.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.
    5.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  6.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.

### 제3조 (이용료 납부)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.
-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,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.
-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서비스 내용 및 비용

### 제1조 (급여제공)

-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
### 제2조 (서비스 내용)

-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,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, 다음

각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.
2. 정기적으로 사회 적응 훈련을 제공한다.
3.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반기(1년을 1~6월, 7월~12월로 나누어 매 반기, 이하 "반기"라 한다)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.

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1. 신체활동지원
2. 일상생활지원
3. 정서지원
4. 인지활동지원
5. 여가활동지원
6.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

④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·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.

### 제3조 (급여이용)

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.

② 급여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.

| 요일  | 시간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|
| 월~금 | 07:00 ~ 19:00 |
| 토   | 07:00 ~ 19:00 |

### 제4조 (특별보호)

①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
2.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,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

③ 전염병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(장기요양운영센터)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

### 제1조 (배상책임 보험가입)

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(이하 "전문인 배상책임보험"이라 한다)에 가입 한다.(지정후 삼성화재 배상책임보험 가입)

### 제2조 (배상책임 및 면책범위)

-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, 신체,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.
-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 1.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
  2.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
  3.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
  4.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

### 제3조(시설물 사용상 주의)

- ① 이용자의 생명, 신체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.
-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,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

## 2026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

| 등급    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| 5등급       | 인지지원등급 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2026년 | 2,512,900 | 2,331,200 | 1,528,200 | 1,409,700 | 1,208,900 | 676,320 |

### [2026년 급여비용 안내]

| 등 급                 |        | '26년 수가 | '26년 본인부담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3시간 이상<br>~6시간 미만   | 1등급    | 41,820  | 6,273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38,720  | 5,808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35,740  | 5,361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34,120  | 5,118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32,490  | 4,874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32,490  | 4,874     |
| 6시간 이상<br>~8시간 미만   | 1등급    | 56,060  | 8,409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51,930  | 7,790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47,940  | 7,191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46,300  | 6,94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44,650  | 6,698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44,650  | 6,698     |
| 8시간 이상<br>~10시간 미만  | 1등급    | 69,730  | 10,46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64,590  | 9,689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59,640  | 8,946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58,010  | 8,702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56,360  | 8,454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56,360  | 8,454     |
| 10시간 이상<br>~13시간 이하 | 1등급    | 76,820  | 11,523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71,160  | 10,674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65,750  | 9,863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64,090  | 9,614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62,460  | 9,369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56,360  | 8,454     |
| 13시간 초과             | 1등급    | 82,370  | 12,356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76,310  | 11,447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70,500  | 10,575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68,860  | 10,329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67,240  | 10,086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56,360  | 8,454     |

< 비급여 항목 및 비용 >

| 비급여 항목 | 금액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|
| 식사 재료비 | 1식 3,800원 |
| 간식비    | 1일 1,000원 |
| 이 미용비  | 자원봉사      |
| 기타     |           |

< 본인부담금 비율 >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가급여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    |
| 기초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%        |
| 기타 의료수급권자<br>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<br>(하위년차성 만성질환자)<br>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<br>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 | 감경 6%, 9% |